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이성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53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 홍성룡, 유 용, 전석기, 노승재,
최 선, 정진철, 문병훈, 김소영,
고병국 의원(9명)

1. 제안이유

-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며, 스포츠 활동과정에서도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지지 않는 실정임.
- 이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상담 시설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이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체육인 인권 교육(안 제5조)
- 마. 인권위원회 심의(안 제6조)
- 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체육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환경을 보호하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
3.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한 단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별 핵심 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4.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의 실시

5.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울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 ① 시장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초·중·고, 대학, 실업팀, 장애인 등 선수의 유형과 선수·체육지도자 등 교육 대상에게 특화된 교육 체계(정서적·심리적 안정 지원을 포함한다)를 마련하여야 하며, 교육 체계에 따른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인권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은 서울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제3항에서 체육인 인권관련 실태조사 실시, 제5조 제1항에서 체육인 인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 제2항에서 선수유형별 특화된 교육체계마련 및 교재개발, 강사양성 등을 지원 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교육대상 유형이 다양하고 지원규모를 특정 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에 따라 비용추계하지 아니하고

안 제7조에서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하나, 서울시체육회에서 인권심리상담센터 운영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내용〉

구 분	2020년 예산	세부내용
안 제7조(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 등) 관련	46백만원	인권심리상담센터 운영비 (서울시 체육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23,000천원(연평균 24,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23,000천원으로 연평균 24,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안 4조 관련 체육인 대상 실태조사 비용은 1회당 온라인 설문조사비(300천 원)을 기준으로 22개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산출

- 안 제5조 체육인 인권교육 비용은 1명의 강사가 연 2회 25개 팀을 대상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

※ 강사수당은 ‘20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일반 2급 225천원)으로 산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23,000천원(연평균 24,6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및 조항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4조)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체육인 인권교육 (제5조)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총 비용(b-a)		24,600	24,600	24,600	24,600	24,600	123,000

- 인권침해 실태조사 : 6,600천원

· 300천원(회당 설문조사비) × 22팀 = 6,600천원

- 체육인 인권교육 : 18,000천원

· 1회당 360천원(강사수당 225천원 + 일반운영비 135천원)

× 연2회 × 25팀 = 18,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양훈

☎ 02-2180-7934

e-mail : huny101@seoul.go.kr